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화학제품안전법 시행

[시행 2026. 3. 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1호, 2025. 12. 31.,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044-201-6806, 6807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생활화학제품 안전·표시기준) 044-201-6829, 6826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회수명령 등 사후관리) 044-201-6809, 6825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살생물제 승인) 044-201-6804, 6827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 12. 31.>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관리 전문위원회
2. 살생물제 관리 전문위원회
3. 정보공개심의 전문위원회
4. 삭제 <2024. 12. 31.>
5. 삭제 <2024. 12. 31.>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관리위원회의 위원 또는 화학·환경·보건·법학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21. 12. 31., 2024. 12. 31.>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전문위원회에서 연구·검토한 사항을 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제2장 생활화학제품의 관리 등

**제3조(실태조사의 절차)**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하는 사유
2.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의 기한, 방법 및 장소
3.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의 요구 내용
4.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 거부에 대한 제재 내용

**제4조(위해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이하 "위해성평가"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에 대한 우려 및 평가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위해성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해야 한다. 다만, 기술 수준 및 위해요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순서를 다르게 할 수 있다.<개정 2022. 2. 10.>

1. 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유해성 확인
2. 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인체·환경에 대한 노출 허용수준의 설정
3. 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인체·환경에 대한 노출량 및 노출수준의 평가
4.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정도 결정
5. 해당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및 법 제10조제8항에 따른 표시기준의 설정 방향의 도출(제4호에 따라 위해성이 있다고 결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위해성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함유 여부 및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의 중점관리물질(이하 "중점관리물질"이라 한다)
  - 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화학물질
  - 다. 살생물물질

2. 생활화학제품 및 그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에 관한 국내외 연구 결과

④ 법 제8조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5. 8. 7., 2025. 10. 1.>

1.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제조시설 소재지
2. 해당 제품에 사용된 다음 각 목의 화학물질의 명칭
  -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6호의2, 제6호의3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및 금지물질(이하 "인체급성유해성물질등"이라 한다)
  - 나. 중점관리물질
  - 다. 살생물물질

3. 그 밖에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위해성평가를 마치면 위해성평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5. 10. 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해성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4. 4. 9.>

**제5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란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

1. 제품의 사진 및 설명서 등 제품정보에 관한 서류
2.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에 관한 서류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용기를 검사한 결과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고압가스를 이용한 스프레이형 제품만 해당한다)
4.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어린이 보호를 위한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안전기준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 보호를 위한 용기 또는 포장을 사용해야 하는 제품만 해당한다)
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의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6.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7.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사본(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이하 "시험·검사기관"이라 한다)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제품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확인 결과를 시험·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0. 12. 31.>

③ 법 제10조제4항에서 “제품정보·성분 및 함량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0. 12. 31., 2025. 10. 1.>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 1의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를 위탁한 자의 경우에는 수탁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2. 제품명, 제형(劑形), 중량·용량·매수
3. 제품의 사진 및 설명서 등의 제품정보
4. 제품에 함유된 모든 물질(이하 “함유물질”이라 한다)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
5. 법 제10조제8항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건본
6.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효과·효능(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들어 있는 살생물물질에 의한 효과·효능을 사용설명서에 기재하거나 표시·광고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영 제5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서 및 첨부서류”란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개정 2020. 12. 31., 2025. 10. 1., 2025. 12. 31.>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사본(한국환경산업기술원 담당자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정보망을 통하여 그 결과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품의 사진 및 설명서 등 제품정보에 관한 서류
3. 함유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에 관한 서류
4. 법 제10조제8항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건본
5. 제3항제6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효과·효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제3항제6호의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출받은 자료에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또는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개정 2020. 12. 31.>

⑥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의 뒤쪽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5. 12. 31.>

1. 삭제 <2025. 12. 31.>
2. 삭제 <2025. 12. 31.>

⑦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및 제4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0. 12. 31., 2025. 10. 1.>

⑧ 법 제10조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0. 12. 31., 2025. 10. 1.>

1. 제3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사항
2.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법 제9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6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① 영 제6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

② 영 제6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개정 2025. 10. 1.>

1. 함유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

2.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주된 기능을 하는 함유물질(이하 "주성분"이라 한다)의 제조원(제조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를 포함한다) 및 해당 제품의 제조방법
  3.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효과·효능 등의 유효성
  4. 주성분과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
  5.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노출경로, 노출형태 등 노출정보를 포함한 위해성
  6.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과 함유물질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의 방법·기준 및 결과
  7.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8.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폭발·화재·노출 시의 응급조치사항
- ③ 법 제10조제6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④ 법 제10조제7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5. 10. 1.>
1. 주성분을 제외한 함유물질의 명칭, 배합비율 및 용도
  2. 제2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3. 제품명, 제형, 중량·용량·매수 및 제조·보관시설의 소재지
- ⑤ 법 제10조제7항 단서에서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5. 10. 1.>
1. 승인 받은 자의 성명 또는 상호, 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2.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
- ⑥ 영 제6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승인 신청서"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변경승인 신청서를 말한다.<개정 2025. 10. 1.>
- ⑦ 영 제6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개정 2025. 10. 1.>
1.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⑧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보완요청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개정 2024. 4. 9.>
- ⑨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영 제6조제4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개정 2024. 4. 9.>
- ⑩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영 제6조제4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의 뒤쪽에 변경승인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개정 2024. 4. 9.>
- ⑪ 영 제6조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변경신고서"란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변경신고서를 말한다.<개정 2025. 10. 1.>
- ⑫ 영 제6조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개정 2025. 10. 1.>
1.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⑬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영 제6조제5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신고 사항을 검토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의 뒤쪽에 변경신고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개정 2024. 4. 9.>
- [전문개정 2020. 12. 31.]

**제7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8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해당 제품에 사용된 인체급성유해성물질등, 중점관리물질 및 살생물물질의 명칭을 말한다. <개정 2020. 12.

31., 2025. 8. 7., 2025. 10. 1.>

② 법 제10조제8항제8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0. 12. 31., 2025. 10. 1.>

1. 제조연월
2. 어린이 보호를 위한 용기 또는 포장을 사용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시(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어린이 보호를 위한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제품만 해당한다)
3.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번호 또는 승인번호
4. 그 밖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시사항

**제7조의2(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① 화학물질안전원장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관한 정보를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정보망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4. 4. 9.>

② 법 제10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해당 제품에 사용된 인체급성유해성 물질등, 중점관리물질 및 살생물물질의 명칭 등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5. 8. 7., 2025. 10. 1.>

[본조신설 2020. 12. 31.]

### 제3장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제8조(물질승인의 유효기간이 별도 적용되는 살생물물질)** 법 제12조제4항제2호에서 “호흡기에 민감한 영향을 끼치는 살생물물질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생물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

1. 호흡기에 민감한 영향을 끼치는 살생물물질
2. 잔류성, 생물축적성 또는 독성 중 둘 이상의 성질을 가진 살생물물질

**제9조(물질승인 신청자료 등)** ①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유형(이하 “살생물제품유형”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② 영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생물물질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8호서식의 살생물물질 승인신청서를 말한다.<개정 2025. 10. 1.>

③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자료(이하 “물질승인 신청자료”라 한다)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0. 12. 31., 2024. 4. 9.>

**제10조(물질승인의 절차 등)**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승인(이하 “물질승인”이라 한다)의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물질승인을 신청한 자(이하 “물질승인신청자”라 한다)가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물질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물질승인 신청자료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물질승인 평가 시작통지서를 물질승인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4. 4. 9.>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보완요청서에 따라 물질승인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개정 2020. 12. 31., 2024. 4. 9.>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라 물질승인 평가의 시작을 통지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물질승인 평가서의 초안을 작성해야 한다.<개정 2024. 4. 9.>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물질승인을 신청한 경우: 1년
2.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물질승인을 신청한 경우: 6개월
- 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4항에 따라 물질승인 평가서의 초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라 물질승인신청자에게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를 알려야 한다.<개정 2024. 4. 9.>
- ⑥ 물질승인신청자는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 따라 의견 제출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나는 날의 7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의견 제출기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의견 제출기간의 연장은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 4. 9.>
- ⑦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 따라 의견 제출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의견 제출기간 연장통지서를 물질승인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4. 4. 9.>
- ⑧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물질승인 여부의 결정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물질승인 결정기간 연장통지서를 물질승인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4. 4. 9.>
- ⑨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물질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살생물물질 승인통지서를 물질승인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개정 2024. 4. 9.>

**제11조(물질승인의 변경승인)** ④ 법 제15조 본문에 따라 물질승인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물질승인 변경승인 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0. 12. 31., 2024. 4. 9., 2025. 12. 31.>

1. 삭제 <2025. 12. 31.>
2. 삭제 <2025. 12. 31.>
-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물질승인의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살생물물질 승인통지서의 뒤쪽에 변경승인 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영 제12조제7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본문에 따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4. 4. 9., 2025. 12. 31.>
-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보완요청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 본문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개정 2020. 12. 31., 2024. 4. 9.>

**제12조(물질승인의 변경신고)** ④ 법 제15조 단서에 따라 물질승인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물질승인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4. 9., 2025. 12. 31.>

1. 삭제 <2025. 12. 31.>
2. 삭제 <2025. 12. 31.>
-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물질승인의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살생물물질 승인통지서의 뒤쪽에 변경신고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4. 4. 9., 2025. 12. 31.>

**제13조(물질동등성의 인정 절차 및 방법)** ① 영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동등성 인정신청서”란 별지 제16호서식의 물질동등성 인정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

- ② 법 제16조제1항 전단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물질동등성의 인정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물질동등성의 인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물질동등성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17호서식의 물질동등성 인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추가로 자료를 요청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의 범위(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에서 본문에 따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4. 4. 9.>

-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16조제2항 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보완요청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개정 2020. 12. 31., 2024. 4. 9.>
- ⑤ 영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물질동등성 인정 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0. 12. 31., 2024. 4. 9.>

**제14조(기존살생물물질의 신고)** ① 법 제18조제2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2. 10., 2025. 10. 1.>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존살생물물질(이하 “기존살생물물질”이라 한다)의 순도 범위
  2. 기존살생물물질의 상세 용도
  3. 삭제 <2020. 12. 31.>
-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존살생물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기존살생물물질 제조·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0. 12. 31., 2024. 4. 9.>
1. 기존살생물물질의 제조를 위탁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54조의2에 따라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살생물제를 제조하고 있거나 제조하려는 자(이하 “국외제조자”라 한다)가 선임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49호서식의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 사실 신고증
-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보완요청서에 따라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개정 2020. 12. 31., 2024. 4. 9.>

**제15조(물질승인 신청계획서의 제출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계획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물질승인 신청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2024. 4. 9.>

1.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작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일정 및 방법
  2. 기존살생물물질의 제조를 위탁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삭제 <2025. 12. 31.>
- ② 법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해야 하는 자들은 당사자 간 합의로 대표자를 선정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이하 이 조에서 “대표자”라 한다)는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당사자들과의 합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0. 12. 31.>
1. 공동 제출할 자료의 선택·생산에 관한 업무
  2. 공동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공동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업무
-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비용의 분담에 관하여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별 살생물물질의 제조량 또는 수입량을 고려하여 분담한다.
- ⑤ 대표자는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자들이 각자 물질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0. 12. 31.>
-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당사자들의 합의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제16조(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공동 제출)** 법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0. 12. 31., 2025. 10. 1.>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료

- 가. 명칭, 화학적 조성, 살생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이 동일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에 대한 물질승인 신청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공정에 관한 내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자료
- 나. 명칭, 화학적 조성이 동일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에 대한 물질승인 신청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2호, 제4호가목·다목(유해성 정보만 해당한다)·마목, 제5호 및 제7호의 자료

2. 영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자료

**제17조(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개별제출 확인 등)** ① 법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개별적으로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물질승인 신청자료 개별제출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2024. 4. 9.>

- 1. 법 제1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개별제출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 살생물물질의 제조를 위탁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3. 삭제 <2025. 12. 31.>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물질승인 신청자료 개별제출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 4. 9.>

**제18조(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제공 등)** ① 법 제19조제5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

- 1. 살생물물질의 물리·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 2. 살생물물질의 인체·동물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위해성 정보에 관한 자료

② 법 제19조제5항 전단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이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확보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자료제공금액”이라 한다)을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제공받는 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자료제공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제공 신청 절차 및 자료제공금액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 12. 31., 2025. 10. 1.>

**제19조(살생물제품의 안전용기 및 포장 기준)** 법 제20조제2항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0. 1.>

- 1. 내용물이 새어 나올 수 없을 것
- 2. 내용물로 인하여 쉽게 손상되거나 내용물과 반응하여 유해한 화합물을 생성하지 않을 것
- 3. 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하여 변형되지 않을 것
- 4. 어린이, 임산부 등 해당 제품으로부터 발생하는 화학물질 등의 노출에 취약한 사람의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
- 5. 그 밖에 안전용기 및 포장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할 것

**제20조** 삭제 <2020. 12. 31.>

**제21조(제품승인의 절차 등)** ① 영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21호서식의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

②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승인(이하 “제품승인”이라 한다)의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품승인을 신청한 자(이하 “제품승인신청자”라 한다)가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품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품승인 신청자료(이하 "제품승인 신청자료"라 한다)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22호서식의 제품승인 평가시작통지서를 제품승인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4. 4. 9.>
-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품승인 신청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보완요청서에 따라 제품승인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개정 2020. 12. 31., 2024. 4. 9.>
- 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제품승인 평가의 시작을 통지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품승인 평가서의 초안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제품승인신청자가 물질승인을 함께 신청한 경우에는 제10조제4항제1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4. 4. 9.>
  -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신청한 경우: 6개월
  - 2.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신청한 경우: 4개월
- ⑥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5항에 따라 제품승인 평가서의 초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3항 전단에 따라 제품승인신청자에게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를 알려야 한다.<개정 2024. 4. 9.>
- ⑦ 제품승인신청자는 법 제22조제3항 후단에 따라 의견 제출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나는 날의 7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의견 제출기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의견 제출기간의 연장은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 4. 9.>
- ⑧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2조제3항 후단에 따라 의견 제출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의견 제출기간 연장통지서를 제품승인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4. 4. 9.>
- ⑨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제품승인 여부의 결정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제품승인 결정기간 연장통지서를 제품승인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4. 4. 9.>
- ⑩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품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24호서식의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를 제품승인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개정 2024. 4. 9.>
- ⑪ 제품승인 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0. 12. 31., 2024. 4. 9.>

**제22조(제품승인의 변경승인)** ① 법 제23조 본문에 따라 제품승인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제품승인 변경승인 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 4. 9., 2025. 12. 31.>

- 1. 삭제 <2025. 12. 31.>
- 2. 삭제 <2025. 12. 31.>
-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품승인의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의 뒤쪽에 변경승인 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살생물제품유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본문에 따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4. 4. 9., 2025. 12. 31.>
-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보완요청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 본문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개정 2020. 12. 31., 2024. 4. 9.>

**제23조(제품승인의 변경신고)** ① 법 제23조 단서에 따라 제품승인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제품승인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4. 9., 2025. 12. 31.>

- 1. 삭제 <2025. 12. 31.>
- 2. 삭제 <2025. 12. 31.>
-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품승인의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의 뒤쪽에 변경신고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4. 4. 9., 2025. 12. 31.>

**제24조(제품승인의 특례 등)**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인체급성유해성물질등 또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9. 4. 17., 2025. 8. 7., 2025. 10. 1.>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제품승인 특례 신청서에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 4. 9.>

③ 제2항에 따라 제품승인의 특례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품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4호서식의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4. 4. 9.>

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보완요청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4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개정 2020. 12. 31., 2024. 4. 9.>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살생물제품 및 해당 제품에 들어 있는 살생물물질에 대한 한시적인 승인 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0. 12. 31., 2024. 4. 9.>

1. 해당 살생물제품의 다음 각 목에 관한 자료
    - 가. 제품명 및 살생물제품유형
    - 나. 제조·수입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2. 해당 살생물제품에 들어 있는 살생물물질의 다음 각 목에 관한 자료
    - 가. 성분, 사용 목적 및 용도
    - 나. 효과·효능
  3. 공중보건 등에 긴급히 필요한 사유와 긴급한 사용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에 관한 자료
  4. 해당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5. 해당 살생물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자료
    - 가. 해당 제품의 시료
    - 나. 노출정보
    - 다. 그 밖에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고시로 정하는 자료
- ⑦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6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으면 한시적인 승인 면제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승인 면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신설 2020. 12. 31., 2024. 4. 9.>

**제25조(제품유사성의 인정 절차 및 방법)** ① 영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유사성 인정신청서”란 별지 제27호서식의 제품유사성 인정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

② 법 제25조제1항 전단 및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제품유사성의 인정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품유사성의 인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품유사성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8호서식의 제품유사성 인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4. 4. 9.>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5조제2항 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보완요청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개정 2020. 12. 31., 2024. 4. 9.>

⑤ 영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품유사성 인정 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0. 12. 31., 2024. 4. 9.>

**제26조(살생물제품의 표시 등)** ① 법 제27조에 따라 살생물제품의 겉면에 해야 하는 표시는 다른 문자 또는 그림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쉽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

1. 한글로 표시하되, 한자나 외국어를 한글과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는 한글 활자의 크기를 한자나 외국어 활자의 크기보다 크게 할 것
2.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표시할 것(새기거나 눌러 찍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워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없을 것

② 법 제27조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5. 8. 7., 2025. 10. 1.>

1. 살생물제품의 제품명 및 살생물제품유형
2. 중량 또는 용량
3. 살생물제품의 승인번호
4. 살생물제품의 유해성
5. 살생물제품의 효과·효능
6. 살생물제품의 표준사용량, 사용방법 및 사용상 주의사항
7.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인체급성유해성물질등 또는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살생물제품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5. 10. 1.>

**제27조(살생물처리제품의 표시기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살생물처리제품의 겉면에 해야 하는 표시는 다른 문자 또는 그림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쉽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

1. 한글로 표시하되, 한자나 외국어를 한글과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는 한글 활자의 크기를 한자나 외국어 활자의 크기보다 크게 할 것
2.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표시할 것(새기거나 눌러 찍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워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없을 것
4. 살생물처리제품을 살생물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을 것

**제28조(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 등)** ① 법 제29조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 2025. 12. 31.>

1. 살생물물질의 물리·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2. 살생물물질의 분류 및 표시
3. 살생물물질의 제조시설 소재지

② 법 제29조제2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5. 8. 7., 2025. 10. 1., 2025. 12. 31.>

1. 살생물제품유형
2.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3.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인체급성유해성물질등 또는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4. 살생물제품의 물리·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5. 살생물제품의 효과·효능
6. 살생물제품의 분류·표시 및 포장
7. 사용방법 및 사용상 주의사항 등 살생물제품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사항
8. 살생물제품의 제조시설 소재지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9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화학물질안전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개정 2024. 4. 9.>

**제29조(살생물처리제품의 정보제공)** ④ 영 제24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제공·열람청구서”란 별지 제29호서식의 정보 제공·열람청구서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

② 영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청구결과통지서”란 각각 별지 제30호서식의 정보청구결과통지서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

**제30조(살생물처리제품 정보 제공·열람 명령의 신청 등)**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열람 명령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정보 제공·열람 명령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정보 제공·열람 청구서 사본 및 해당 살생물처리제품 구매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정보청구결과통지서 사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정보의 제공·열람 명령의 여부, 범위 및 방법을 결정하여 별지 제32호서식의 정보 제공·열람명령 신청결과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보의 제공·열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0일 이내에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열람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정보제공·열람 명령서로 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4호서식의 정보 제공·열람 명령 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제31조(자료 보호기간의 연장)** ① 영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료 보호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자료 보호기간 연장 신청서를 자료 보호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4. 9., 2025. 12. 31.>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자료 보호기간 연장결과 통지서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 4. 9.>

**제32조(자료 사용의 동의)**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른 자가 이미 제출한 자료를 활용하려는 자는 해당 자료의 소유자와 합의하여 자료 사용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33조(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 동의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서 “해당 척추동물시험자료 소유자의 성명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척추동물시험자료(이하 “척추동물시험자료”라 한다) 소유자의 성명 또는 상호
2. 척추동물시험자료 소유자의 주소 및 연락처

② 법 제33조제5항 본문에 따라 척추동물시험자료 소유자의 사용 부동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 부동의 확인신청서에 척추동물시험자료 소유자의 사용 부동의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4. 9.>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8호서식의 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 부동의 확인결과서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 4. 9.>

④ 법 제33조제5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해당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생산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간으로서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제출을 명할 때 함께 통지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4. 4. 9., 2025. 10. 1.>

#### 제4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사후 관리 등

**제34조(표시·광고의 제한)** ① 법 제34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문구”란 다음 각 호의 문구를 말한다. <개정 2022. 2. 10., 2025. 10. 1.>

1. 무독성
  2. 환경·자연친화적
  3. 무해성
  4. 인체·동물친화적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표현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문구
- ②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문구”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문구를 말한다.  
 <개정 2020. 12. 31., 2022. 2. 10., 2025. 10. 1.>
1. 제품명 및 제품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
  2. 제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상 주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유하는 문구
  3. 제품의 효과·효능(제5조제5항에 따른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제6조제9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 제21조제10항에 따른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에 기재된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알리는 문구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번호
    - 가.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번호 또는 승인번호
    - 나. 제2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승인번호

**제35조(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보고)**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보고서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사진 등의 기본정보
  2.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의 내용
  3. 향후 조치계획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을 한 자가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36조(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조치권고)** ①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조치권고의 수용을 통지한 자는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계획서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제조량·수입량, 판매량 및 거래업체명
  2. 조치 계획량(조치계획을 제출할 당시의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유통량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3. 조치를 이행하는 데 걸리는 예상기간
  4. 조치를 이행할 장소 및 구체적인 이행방법
  5. 조치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
- ② 제1항에 따라 조치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조치를 이행한 후 제1항제3호에 따른 기간의 종료일부턴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결과보고서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제조량·수입량, 판매량, 조치량 및 미조치량 등이 포함된 조치실적
  2. 미조치량 등의 명세 및 향후 조치계획
  3.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 ③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계획서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보고서에 보완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의2(품질관리 의무)** ① 법 제36조의2제1항에서 “제조·보관 시설, 안전관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

②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31.]

**제37조(회수 등의 조치명령)**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회수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계획서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제조량·수입량, 판매량 및 거래업체명
2. 조치 계획량(조치계획을 제출할 당시의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유통량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3. 조치명령을 이행하는 데 걸리는 예상기간
4. 조치명령을 이행할 장소 및 구체적인 이행방법
5. 조치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조치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조치명령을 이행한 후 제1항제3호에 따른 기간의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결과보고서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제조량·수입량, 판매량, 조치량 및 미조치량 등이 포함된 조치실적
2. 미조치량 등의 명세 및 향후 조치계획
3.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③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계획서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보고서에 보완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38조(과징금의 부과 등)**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 및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별지 제39호서식의 과징금 납부통지서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② 영 제3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에 납부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별지 제41호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결과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영 제3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과징금 분할납부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서에 분할납부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별지 제43호서식의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결과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5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의 기반조성

**제39조(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영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44호서식의 시험·검사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영 제3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서”란 별지 제45호서식의 시험·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

④ 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6호서식과 같다.

**제40조(시험·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41조제7항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다. <개정 2024. 4. 9.>

1. 정기평가: 시험·검사기관의 운영실태 및 사후관리에 대한 평가를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된 날부터 2년마다 실시

2. 수시평가: 시험·검사기관에서 실시한 시험·검사내용 및 시험·검사결과의 적정성·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시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12. 31.>

1. 영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 운영의 적절성
2. 표준시료에 대한 분석능력의 숙련도
3. 영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영계획서에 따른 운영 여부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 4. 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20. 12. 31., 2024. 4. 9.>

**제41조(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등)** ① 법 제43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란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기평가 또는 수시평가 결과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

②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42조(교육훈련 및 홍보)**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및 홍보의 주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도 제고
  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대한 자발적 실천
- ②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대면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한다.
- ③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홍보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
  2. 현장체험 등의 체험활동을 이용하는 방법
  3. 「방송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활용하는 방법
  4. 소비자단체의 홍보 활동을 지원하는 방법

**제43조(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지원업무)** 법 제46조제1항제8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0. 12. 31., 2025. 10. 1.>

1. 법 제1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신고 및 변경신고 자료의 검토
2. 삭제 <2020. 12. 31.>
3. 삭제 <2020. 12. 31.>
4. 법 제48조에 따른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제44조(생활화학제품 등의 정보망 운영)**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정보망을 통하여 영 제37조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첨부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 업무 처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45조(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법 제48조제1항에서 “시장 감시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

1. 유통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에 관한 현황 정보의 조사 및 수집
2. 유통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성에 관한 조사
3. 유통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표시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자료 수집 및 신고
4. 그 밖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협력이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5장의2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 <신설 2021. 12. 31.>**

**제45조의2(구제급여 지급 신청)** ①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건강피해조사·환경분쟁조정·구제급여(피해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1., 2025. 10. 1.>

1. 공통 제출자료

- 가. 살생물제품의 사진, 구입 영수증 등 살생물제품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실제 사용한 살생물제품
- 나. 신청자 명의의 통장 사본 및 본인증명 서류
- 다. 신청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에 해당하는 배상이나 구제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진료기록·검사서류 등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이하 "살생물제품피해"라 한다)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마.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자가 사망한 피해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개별 제출자료

- 가. 진료비 신청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 약국에서 발급한 약제비 영수증 등 진료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나. 법 제48조의8에 따른 미지급 진료비 신청의 경우
  - 1)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 약국에서 발급한 약제비 영수증 등 진료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 사망진단서 등 피해자가 사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주민등록표 등본 등 사망한 피해자와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4)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자의 법 제48조의8제2항에 따른 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 장애일시보상금 신청의 경우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전신 장애율이 표시된 진단서
- 라.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례비 신청의 경우
  - 1) 사망진단서 등 피해자가 살생물제품피해로 사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자의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중 우선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피해자의 장례를 치른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장례비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1.>

[본조신설 2021. 12. 31.]

**제45조의3(조사·감정 등의 절차 등)**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법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조사·감정 등을 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 알리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감정 등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감정 등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2. 31.]

**제45조의4(구제급여 지급결정의 통지)** ① 법 제48조의4제4항 본문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신청자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 12. 31.]

**제45조의5(피해등급의 기준)** 법 제48조의4제5항에 따른 피해정도에 대한 등급(이하 “피해등급”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1. 12. 31.]

**제45조의6(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갱신 신청)** 법 제48조의5제2항 및 영 제37조의5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갱신신청서는 별지 제46호의4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 12. 31.]

**제45조의7(구제급여의 지급 기준·범위)** 법 제48조의6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기준·범위는 별표 3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21. 12. 31.]

**제45조의8(구제급여의 지급 방법)**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법 제48조의7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의4제4항 본문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하 “구제급여 대상자”라 한다)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개설한 예금계좌 등을 말한다)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해당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본조신설 2021. 12. 31.]

**제45조의9(구제급여 지급중단 및 부당이득의 환수)** ① 위원회는 법 제48조의9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중단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제급여 대상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② 위원회는 구제급여 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이 중단된 구제급여 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을 한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중단된 구제급여의 지급을 재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시정을 한 날의 전날까지의 구제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4. 12. 31.>

④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법 제48조의9제3항에 따라 급여액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환수사유, 환수금액, 납부기한, 납부계좌 및 이의신청방법 등을 명시하여 구제급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1.>

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제4항에 따른 환수금액을 내지 않으면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31.]

**제45조의10(재심사 청구)** ① 법 제48조의13제1항에 따라 재심사 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구제 재심사청구서에 재심사 청구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1.>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청구를 한 사람에게 보완해야 할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③ 법 제48조의13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 지급 등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에 따른다. <개정 2024. 12. 31.>

④ 위원회는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재심사청구인에게 제3항에 따른 결정서 정본(正本)을 보내야 하고, 그 결정에 따라 법 제48조의13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변경 사

항을 통지해야 한다.<신설 2024. 12. 31.>

[본조신설 2021. 12. 31.]

**제45조의11(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영 제37조의8제1항에 따라 법 제48조의16제1항 전단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원인제품(이하 "원인제품"이라 한다)의 제조·수입업자에게 별지 제46호의6서식의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납부고지서를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31.]

**제45조의12(이의신청)** 영 제37조의10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46호의7서식의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이의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21. 12. 31.]

**제45조의13(분담금의 분할납부 신청)** ① 영 제37조의11제2항에 따라 분담금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원인제품 제조·수입업자는 별지 제46호의8서식의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분할납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영 제37조의11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분담금 및 가산금(법 제48조의16제7항 후단에 따른 가산금이 부과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보장하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서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영 제37조의11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별지 제46호의9서식의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분할납부 신청결과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31.]

## 제6장 보칙

**제46조(기록 및 보고)**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보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시기까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자료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최초보고: 2020년 3월 31일
2. 그 이후의 보고: 제1호에 따른 보고일이 속한 연도에서 매 2년이 되는 연도의 3월 31일

② 법 제49조제3항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보고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른 법령에 따라 법 제4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0. 12. 31., 2025. 10. 1.>

**제47조(출입·검사·수거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미리 출입·검사의 목적 및 일시, 검사의 내용 등을 해당 제조자·수입자 등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검사가 필요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같은 곳인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민원·환경오염·광역감시활동 또는 인력운영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4. 4. 9.>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
2.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3.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4. 「소음·진동관리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5.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6. 「하수도법」 제6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
7.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8.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9.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③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수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정보를 확인 또는 시험·검사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4. 9.>

1. 화학물질안전원
2. 시험·검사기관

**제48조(권리·의무의 승계 사실의 통보)**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물질승인등 또는 제품승인등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47호서식의 권리·의무 승계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2024. 4. 9.>

1. 다음 각 목 중 해당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 법 제10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 나. 법 제12조에 따른 물질승인 또는 법 제15조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
    - 다. 법 제20조에 따른 제품승인 또는 법 제23조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
  2.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
  3. 계약서 사본 등 양도 또는 합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도 또는 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 ②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47호서식의 권리·의무 승계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 12. 31.>

1. 법 제10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
- ③ 제1항에 따라 제출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을 한 자가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제목개정 2020. 12. 31.]

**제49조(수수료)** ① 법 제52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제49조의2(영문증명서의 발급)** ① 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수출하려는 자에게 해당 제품 및 살생물제가 국내에서 적법하게 판매·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영문으로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4. 9.>

-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20. 12. 31.]

**제50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 ① 법 제54조의2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

1.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자
  2. 대한민국 안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가진 자
- ② 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이하 “선임된 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선임 또는 해임된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해임 사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 4. 9., 2025. 12. 31.>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선임계약서 또는 해임통보서 사본 등 선임 또는 해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별지 제48호서식의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해임 사실 신고서에 기재하는 사항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서류를 말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임된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선임된 자 또는 해임된 자가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9호서식의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 또는 해임 사실 신고증을 내줘야 한다.<개정 2024. 4. 9.>
- ⑤ 선임된 자는 법 제54조의2제3항에 따라 살생물제를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에게 영 제39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31.]

**부칙** <제21호, 2025.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승인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살생물제품유형(제9조제1항 관련)

분류	살생물제품유형	설명
1. 살균제류 (소독제류)	가. 살균제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 공간 또는 그 밖의 공간에서 살균, 멸균, 소독, 향균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나. 살조제(殺藻劑)	수영장 등 실내·실외 물놀이시설, 수족관, 어항 등 수중에 존재하는 조류의 생육을 억제하여 사멸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공공수역에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2. 구제제류	가. 살서제(殺鼠劑)	쥐 등 설치류를 제거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나. 기타 척추동물 제거제	설치류를 제외한 그 밖에 유해한 척추동물을 제거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다. 살충제	파리, 모기, 개미, 바퀴벌레, 진드기 등 곤충을 제거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라. 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	곤충을 제외한 그 밖에 유해한 무척추동물을 제거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마. 기피제	기피의 방법을 이용하여 유해생물을 무해(無害)하게 하거나 억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인체에 직접 적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보존제류 (방부제류)	가. 제품보존용 보존제	제품의 유통기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품의 보관 또는 보존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나.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제품 표면의 초기 속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품 표면 또는 코팅을 보존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다.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섬유, 가죽, 고무 등을 보존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라. 목재용 보존제	목재 또는 목재 제품을 보존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다. 건축자재용 보존제	목재를 제외한 다른 건축자재, 석조, 복합 재료를 보존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바. 재료·장비용 보존제	다음의 재료·장비 등을 보존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1) 산업공정에서 이용되는 재료·장비·구조물 2) 냉각 또는 처리 시스템에 사용되는 담수 등의 액체 3) 금속·유리 또는 그 밖의 재료를 가공하거나 자르거나 깎는 데 사용되는 유체(流體)
	사. 사체·박제용 보존제	인간 또는 동물의 사체나 그 일부를 보존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4. 기타	선박·수중 시설용 오염방지제	선박, 양식 장비, 그 밖의 수중용 구조물에 대한 유해생물의 성장 또는 정착을 억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승인 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 제조·보관시설, 안전관리 등의 기준(제36조의2제1항 관련)

**1. 제조시설 기준**

- 가. 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작업대, 장비 및 멸균시설(멸균이 필요한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갖추고 있을 것
  - 나. 오염 및 교차오염의 방지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다. 제품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온도·습도 등 환경조건을 유지할 것
  - 라. 작업자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배기시설 및 보호장비 등을 갖추어 것
  - 마. 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원료, 자재 등을 보관하는 시설을 갖추어 것
  - 바. 부적합 제품을 보관하는 별도의 구획을 설정할 것
- \* 비고: 제품을 수입하는 자는 제조시설 기준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2. 보관시설 기준**

- 가. 오염 및 해충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것
- 나. 제품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온도·습도 등 환경조건을 유지할 것
- 다. 폭발 또는 발화의 우려가 있는 제품은 별도로 보관할 것
- 라. 부적합 제품을 보관하는 별도의 구획을 설정할 것

**3. 안전관리 기준**

- 가. 시험·검사시설 기준
    - 1) 원료, 자재 및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시험·검사를 위한 시약, 기구 및 시설·장비를 갖추어 것
    - 2) 미생물시험실은 일반시험실과 구획되어 있을 것
    - 3) 제품의 유효기간 평가를 위한 안전성 시험용 시료를 별도의 구획을 설정하여 보관할 것
- \* 비고: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험·검사시설 기준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나. 인력 기준

- 1)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사람 및 환경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제품의

- 제조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책임자를 지정할 것
- 2) 원료, 자재, 제품의 보관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를 지정할 것
- 3) 제품의 품질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시험·검사를 수행하는 담당자를 지정할 것

\* 비고: 제품을 수입하는 자는 인력 기준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다. 문서 및 기록관리 기준

- 1)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준서 및 품질관리기준서를 작성하여 보존할 것
- 2) 모든 문서의 기록을 개정 및 수정 이력이 확인되도록 관리하며, 보존 기간 등을 설정하여 보관·관리할 것
- 3) 제품의 제조와 관련된 문서의 보관기간은 해당 제품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간을 포함하여 10년까지로 하되, 법률 등에서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보존할 것
- 4) 제품표준서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
  - 가) 제품명, 제형 및 성상
  - 나) 제품승인 연월일 및 승인사항 변경 연월일
  - 다) 제품의 효과·효능,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 라) 승인받은 원료의 양 및 제품에 사용된 원료의 양
  - 마) 제조공정흐름도, 상세 제조방법 및 작업 중 주의사항(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위탁하는 공정의 범위를 포함한다)
  - 바) 원료, 자재 및 제품의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
  - 사) 제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약, 기구 및 시설·장비
  - 아) 제품의 보관조건 및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
  - 자) 제품 및 제품표준서의 이력 관리
- 5) 제조관리기준서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
  - 가) 제품의 제조기록에 관한 사항
  - 나) 사용하려는 원료에 대한 적합판정의 확인 방법
  - 다) 제품의 제조를 위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칭량과 멸균작업 등 중요 공정의 이중 점검 방법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라) 원료, 자재 및 제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 마)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위탁제조관리에 관한 사항

6) 품질관리기준서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

가) 제품의 시험 항목 및 기준 등이 포함된 시험지시서

나) 제품의 시험·검사를 위한 시약, 기구 및 시설·장비 명세 및 점검 방법

다) 제품의 시험·검사를 위한 시료의 채취·보관 방법 및 주의사항

라) 제품의 유효기간 평가를 위한 안정성 시험방법 및 시험기준

마) 제조를 위탁하거나 시험검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료의 송부 및 시험결과 판정 방법

##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41조제2항 관련)

###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각각의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43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 1) 고의나 악의가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국민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시험·검사기관의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거나 법 제41조제7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아주 우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업무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공익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위반 행위자가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하게 되는 등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43조제1항제1호	지정 취소			
나. 법 제4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43조제1항제2호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지정 취소
다. 업무정지 기간 중에 시험·검사 업무를 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제3호	지정 취소			
라. 법 제41조제7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법 제43조제1항제4호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지정 취소
마. 법 제4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43조제1항제5호	지정 취소			
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검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제6호	업무 정지 1년	지정 취소		
사. 지정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휴업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제7호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지정 취소

피해등급의 기준(제45조의5 관련)

피해등급	장애내용	전신 장애율
사망	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해 사망한 사람	
1급	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해 초고도 장애가 남은 사람	80 % 이상
2급	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해 고도 장애가 남은 사람	60 % 이상
3급	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해 중등도 장애가 남은 사람	40 % 이상
4급	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해 경도 장애가 남은 사람	20 % 이상
등급 외	1. 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해 경미한 장애가 남은 사람 2. 장애가 고정되지 않은 사람	20 % 미만 또는 판정불가

비고

1. 피해등급은 6개월 이상 치료 후 장애가 고정된 상태에서 판정한다.
2. 피해등급 산정을 위한 전신 장애율의 산정 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구제급여의 지급 기준·범위(제45조의7 관련)

유형	지급 기준·범위
가. 진료비	<p>「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한 상해나 질병의 치료를 받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로서 그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p> <p>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 중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p> <p>2)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 비용 중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p>
나. 장애일시보상금	<p>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로서 다음의 피해등급에 해당하는 금액</p> <p>1) 피해등급 1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지급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2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 이하 “기준중위소득”이라 한다) 1천분의 28천500에 해당하는 금액</p> <p>2) 피해등급 2급: 기준중위소득의 1천분의 20천520에 해당하는 금액</p> <p>3) 피해등급 3급: 기준중위소득의 1천분의 13천680에 해당하는 금액</p> <p>4) 피해등급 4급: 기준중위소득의 1천분의 6천840에 해당하는 금액</p>
다. 사망일시보상금	<p>구제급여 지급 신청 당시 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로서 라목에 따른 장례비의 100분의 1천500에 해당하는 금액</p>
라. 장례비	<p>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의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로서 기준중위소득의 1천분의 897에 해당하는 금액</p>

비고

1. 다목의 경우 사망일시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순위는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순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이면 사망일시보상금을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수수료(제49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구분	금액
가. 법 제13조에 따른 물질승인의 신청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물질승인의 신청	200,000원
2)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물질승인의 신청	100,000원
나. 법 제15조 본문에 따른 물질승인의 변경승인 신청	50,000원
다.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물질동등성의 인정 신청	50,000원
라. 법 제21조에 따른 제품승인의 신청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물질승인의 신청	200,000원
2)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물질승인의 신청	100,000원
마. 법 제23조 본문에 따른 제품승인의 변경승인 신청	50,000원
바.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제품승인의 신청	50,000원
사.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제품유사성의 인정 신청	50,000원
아.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 신청	20,000원

2. 감면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른 금액의 50%, 소기업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른 금액의 80%를 감면한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수탁자 (신청인이 위탁한 자인 경우)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제조방식	<input type="checkbox"/> 주문자 상표부착 제조(OEM) <input type="checkbox"/> 주문자 개발 제조(ODM) <input type="checkbox"/> 기타(제조방식 설명)	
신청 제품 정보	제조·수입	<input type="checkbox"/> 제조 <input type="checkbox"/> 수입	품목
	제품명	용도	
	제형	중량·용량·매수	
	제조국명 (수입의 경우)	제조회사명 (수입의 경우)	
	신고번호 (갱신의 경우)	유효기간 (갱신의 경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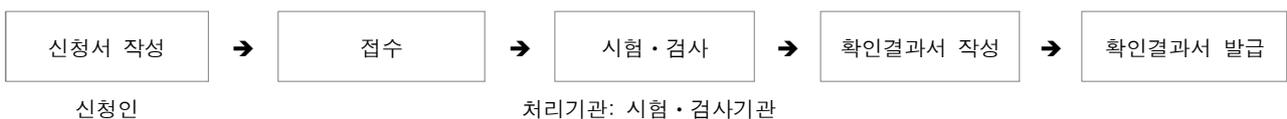
시험·검사기관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제품의 사진 및 설명서 등 제품정보에 관한 서류</li><li>2.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에 관한 서류</li><li>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용기를 검사한 결과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고압가스를 이용한 스프레이형 제품만 해당합니다)</li><li>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어린이 보호를 위한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안전기준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 보호를 위한 용기 또는 포장을 사용해야 하는 제품만 해당합니다)</li><li>5.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li><li>6.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li><li>7.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사본(「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라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li></ol>
------	--

### 작성방법

1. 수탁자란은 제품을 위탁제조 등에 의한 방식으로 제조하는 경우에 작성하며, 신청인이 위탁한 자인 경우에는 수탁자 정보를 적습니다.
2. 수탁자란에 작성해야 할 수탁자 정보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로 첨부합니다.

### 처리절차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앞쪽)

발행번호		접수번호			
확인 완료일		접수 연월일			
신청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확인 제품	제조·수입 [ ] 제조 [ ] 수입	품목			
	제품명	용도			
	제형	중량·용량·매수			
	제조국명(수입의 경우)	제조회사명(수입의 경우)			
확인 결과	■ 검사방법:		■ 환경조건: 온도 ( ) °C, 습도 ( ) % R.H.		
	검사 구분	판정	부적합 사항	비고	종합판정
					[ ] 적합
					[ ] 부적합
	작성자:		기술책임자:		
	유효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시험·검사기관

직인

### 유의사항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 확인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위 판정은 신청인이 제시한 제품에 한정하여 확인된 결과입니다.

### 1. 화학물질 확인결과

연번	확인항목	확인기준	확인결과	판정	비고

### 2. 용기·포장 및 중량 확인결과

연번	확인항목	확인기준	확인결과	판정	비고

### 3. 어린이보호포장 확인결과

연번	확인항목	확인기준	확인결과	판정	비고

### 4. 제품 사진

전면	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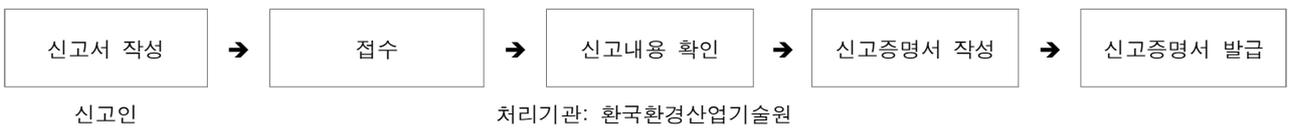


첨부서류	1. 신고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사본(한국환경산업기술원 담당자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정보망을 통하여 그 결과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제품의 사진 및 설명서 등의 제품정보에 관한 서류 다. 함유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에 관한 서류 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8항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건본 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항제6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효과·효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제3항제6호의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1. ① 신고인란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의 신청인과 동일해야 합니다.
2. ② 수탁자란은 제품을 위탁제조 방식으로 제조하는 경우에 작성하며, 신고인이 위탁자인 경우 수탁자 정보를 적되, 수탁자란에 작성해야 할 수탁자 정보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처리절차**





<기재사항>

연 월 일	내용	확 인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90일
------	------	------	-----

신청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대표자 주소	
	제조·보관시설 소재지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신청 제품 정보	제조·수입	[ ] 제조 [ ] 수입
	제품명	품목
	제형	용도
	함유물질 및 그 분량	성상
	제조방법	효과·효능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중량·용량·매수	저장방법 및 유통기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함유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에 관한 서류</li> <li>2.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주된 기능을 하는 함유물질(이하 "주성분"이라 한다)의 제조원(제조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를 포함한다) 및 해당 제품의 제조방법에 관한 서류</li> <li>3.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효과·효능 등의 유효성에 관한 서류</li> <li>4. 주성분과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서류</li> <li>5.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노출경로, 노출형태 등 노출정보를 포함한 위해성에 관한 서류</li> <li>6.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과 함유물질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의 방법·기준 및 결과에 관한 서류</li> <li>7.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관한 서류</li> <li>8.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폭발·화재·노출 시의 응급조치사항에 관한 서류</li> </ol>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li> <li>2.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li> </ol>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화학물질안전원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변경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대표자 주소		
	제조·보관시설 소재지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신청 대상 제품 정보	제품명	승인번호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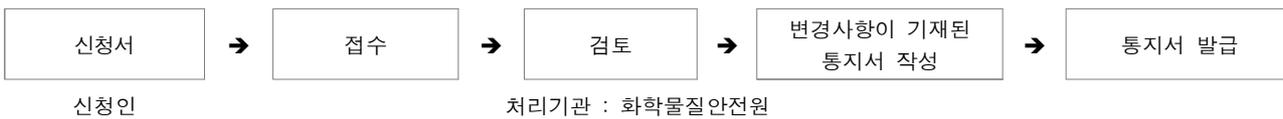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 처리절차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대표자 주소		
	제조·보관시설 소재지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신고 대상 제품 정보	제품명	승인번호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7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1항·제1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 처리절차



신고인

처리기관 : 화학물질안전원

## 수정 · 보완요청서

신청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구분	<input type="checkbox"/>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input type="checkbox"/> 물질동등성 인정
	<input type="checkbox"/>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변경승인	<input type="checkbox"/> 살생물제품 승인
	<input type="checkbox"/> 기존살생물물질 신고	<input type="checkbox"/> 살생물제품 변경승인
	<input type="checkbox"/> 살생물물질 승인	<input type="checkbox"/> 제품승인 특례
	<input type="checkbox"/> 살생물물질 변경승인	<input type="checkbox"/> 제품유사성 인정
자료제출 기한	년 월 일까지	

수정 · 보완 사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후단, 제16조제2항 후단, 제22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8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3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4항, 제21조제4항, 제22조제3항, 제24조제5항 또는 제25조제4항에 따라 자료를 위의 사항에 대하여 수정 ·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직인

승인번호 제 호	
<b>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b>	
승인받은 자	상호(명칭) <span style="float: right;">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span>
	성명(대표자) <span style="float: right;">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span>
	대표자 주소
	제조·보관시설 소재지 <span style="float: right;">(전화번호: ) (팩스번호: )</span>
	구분 [ ] 제조자 [ ] 수입자
제품명	품목
제형	용도
함유물질 및 그 분량	
효과·효능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중량·용량·매수	
저장방법 및 유통기한	
<p>「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을 통지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b>화학물질안전원장</b>	<b>직인</b>

변경사항

변경일자	내용	확인

## 살생물물질 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	------	------

신청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구분	[ ] 제조자	[ ] 수입자	[ ] 법 제54조의2에 따라 선임된 자

구분	제조·수입	[ ] 제조	[ ] 수입
	제출방법	[ ] 공동제출	[ ] 개별제출
	신규승인·재승인	[ ] 신규승인	[ ] 재승인

신청정보	살생물물질명		
	고유번호 (CAS No. 등)	분자식	
	살생물제 품유형		
	살생물물질 용도		
	제조시설 소재지		

재승인 신청정보	기존 승인번호	유효기간
-------------	---------	------

공동제출	대표자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구성원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연락처
	공동 제출 자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 ] 제13조제3항

따라 위와 같이 살생물물질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물질승인 평가 시작통지서

신청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살생물물질명			
고유번호 (CAS No. 등)			
접수번호	(접수일시: )	평가완료 예정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물질승인을 위한 평가의 시작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직인

## 의견 제출기간 연장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신청사항	구분	[ ] 살생물물질	[ ] 살생물제품
	승인신청 접수번호		
	살생물물질의 명칭 또는 살생물제품명		
	연장신청일수 (30일 이내)		
	의견 제출기간 연장신청 사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제14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제22조제3항 후단  
[ ] 제10조제6항 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 제출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 ] 제21조제7항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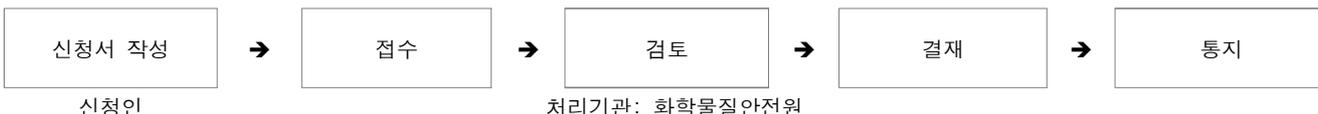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 작성방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의2에 따라 선임된 자가 의견 제출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란에 선임된 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 처리절차



## 의견 제출기간 연장통지서

신청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구분	<input type="checkbox"/> 살생물물질 <input type="checkbox"/> 살생물제품
----	---

물질명 또는 제품명	
------------------	--

의견제출 기간 연장 신청 접수번호	(접수일시: )	의견제출 연장기간	
-----------------------------	----------	--------------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제14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제22조제3항 후단  
[ ] 제10조제7항  
[ ] 제21조제8항  
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 제출기한의 연장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직인

## 물질승인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신청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살생물물질명		고유번호 (CAS No. 등)	
접수번호 (접수일시)			
연장기간			
연장사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8항에 따라 물질승인 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직인

승인번호 제 호			
<b>살생물물질 승인통지서</b>			
승인을 받은 자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구분	[ ] 제조자 [ ] 수입자 [ ] 법 제54조의2에 따라 선임된 자	
살생물물질의 명칭 (고유번호)			
살생물제 품유형		순도 범위	
살생물물질의 사용자 범위		살생물물질 승인의 유효기간	
살생물물질의 용도			
불순물의 특성 및 함량 범위			
제조시설 소재지			
제조 공정 등 제조방법			
<p>「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살생물물질의 승인을 통지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화학물질안전원장 <span style="border: 2px solid red; padding: 5px;">직인</span></p>			

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

변경일자	내용	확인

## 물질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90일(「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7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180일)

신청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수입자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수입국

수탁자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살생물물질 승인에 대한 변경승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50,000원 (중기업은 25,000원, 소기업은 10,000원)
------	-------------------	---

#### 작성방법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의2에 따라 선임된 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란에는 선임된 자의 정보를 적고, 수입자란에는 수입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 살생물물질의 제조를 위탁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란에 수탁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변경사항이 기재된 통지서 작성	→	통지서 발급
--------	---	----	---	----	---	---------------------	---	--------

신청인

처리기관: 화학물질안전원

## [ ] 물질승인 [ ] 제품승인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수입자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수입국
수탁자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제15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제12조제1항 에  
[ ] 제23조 단서 [ ] 제23조제1항

[ ] 살생물물질  
따라 [ ] 살생물제품 승인사항의 변경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 작성방법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의2에 따라 선임된 자가 신고하는 경우 신고인란에는 선임된 자의 정보를 적고, 수입자란에는 수입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의 제조를 위탁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란에 수탁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 처리절차



신고인

처리기관: 화학물질안전원

## 물질동등성 인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80일(추가자료를 요청한 경우에는 240일)		
신청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기준 살생물 물질	살생물물질의 명칭				
	고유번호(CAS No. 등)				
	물질승인번호	물질승인의 유효기간			
	살생물제품유형	제조시설 소재지			
신청정보	살생물물질명				
	고유번호(CAS No. 등)	분자식			
수입자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수입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물질동등성의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물질동등성을 인정받으려는 살생물물질의 화학적 조성 등의 식별정보 2. 물질동등성을 인정받으려는 살생물물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과정 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사용에 관한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 사실 신고증 1부	수수료 50,000원 (중기업은 25,000원, 소기업은 10,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작성방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의2에 따라 선임된 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란에는 선임된 자의 정보를 적고, 수입자란에는 수입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검토	⇒	평가	⇒	위원회 심의	⇒	통지서 발급
--------	---	---------	---	----	---	--------	---	--------

신청인

처리기관: 화학물질안전원

## 물질동등성 인정통지서

신청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기준 살생물물질 정보	살생물물질명		
	고유번호 (CAS No. 등)		
	승인번호	승인 유효기간	
살생물물질명			
고유번호 (CAS No. 등)			
접수번호	(접수일시: )	승인번호	제 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에 따라 물질동등성의 인정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직인

## 기존살생물물질 제조·수입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신고사항	기존살생물물질의 명칭	고유번호(CAS No. 등)			
	화학적조성	제조(수입)량			
	기존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 품유형				
	순도 범위				
기존살생물물질의 상세 용도					
수입자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수입국
수탁자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 ] 제조 하려는 기존살생물물질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수입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살생물물질의 제조를 위탁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 사실 신고증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작성방법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의2에 따라 선임된 자가 신고하는 경우 신고인란에는 선임된 자의 정보를 적고, 수입자란에는 수입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 살생물물질의 제조를 위탁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란에 수탁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신고인	→	접수	→	검토
---------------	---	----	---	----

처리기관: 화학물질안전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물질승인 신청계획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제출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제출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구분	[ ] 제조자 [ ] 수입자 [ ] 제54조의2에 따라 선임된 자

제출사항	제조·수입	[ ] 제조 [ ] 수입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명칭	
	고유번호(CAS No. 등)	
	살생물제 품유형	
	기존살생물물질 제조·수입신고 접수번호	
	승인유예기간 종료일	물질승인 신청 예정일

수입자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수입국

수탁자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물질승인 신청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자료별 작성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에 관한 서류 2. 살생물물질의 제조를 위탁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 작성방법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의2에 따라 선임된 자가 제출하는 경우 신청인란에는 선임된 자의 정보를 적고, 수입자란에는 수입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 살생물물질의 제조를 위탁한 자가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란에 수탁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 처리절차



제출인

처리기관: 화학물질안전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물질승인 신청자료 개별제출 확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구분	[ ] 제조자 [ ] 수입자 [ ] 제54조의2에 따라 선임된 자

신청사항	기존살생물물질의 명칭	
	고유번호(CAS No. 등)	살생물제 품유형
	화학적 조성	
	제조(수입)량	
	상세 용도	

개별제출 사유	[ ] 영업비밀 공개로 상당한 손실 발생 [ ] 분류 및 표시 상이	[ ] 개별제출로 비용절감 가능 [ ] 동일한 자료 선택에 대한 이견
구체적 사유		
개별제출 자료의 범위		

수입자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수입국

수탁자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제조 [ ] 수입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개별제출에 대한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개별 제출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살생물물질의 제조를 위탁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 작성방법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의2에 따라 선임된 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란에는 선임된 자의 정보를 적고, 수입자란에는 수입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 살생물물질의 제조를 위탁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란에 수탁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	검토	→	확인서 작성	→	확인서 발급
---------------	---	----	---	----	---	--------	---	--------

처리기관: 화학물질안전원

## 물질승인 신청자료 개별제출 확인서

신청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신고 사항	기존살생물물질명	
	고유번호(CAS No. 등)	살생물제 품유형
	화학적 조성	
	제조(수입)량	
	상세 용도	
개별제출 자료의 범위		
개별제출 사유		
확인 결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개별제출에 대한 확인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직인

##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구분	[ ] 제조자 [ ] 수입자 [ ] 제54조의2에 따라 선임된 자
구분	제조·수입	[ ] 제조 [ ] 수입
	신규승인·재승인	[ ] 신규승인 [ ] 재승인
신청정보	제품명	살생물제품유형
	제형	유통기한
	표준사용량	사용방법
	제조시설 소재지	
재승인 신청정보	기존 승인번호	
	유효기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 ] 제21조제3항  
따라 위와 같이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p>첨부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살생물제 제품에 함유된 물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살생물제 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을 포함한 모든 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사용 목적 및 용도</li> <li>나. 살생물제 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의 공급자명 및 주소</li> <li>다. 제품에 함유된 나노물질의 명칭, 사용목적 및 용도(나노물질을 의도적으로 함유한 경우만 해당합니다)</li> </ol> </li> <li>2. 살생물제 제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물리·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li> <li>나. 살생물제 제품의 용도, 주요 노출경로, 노출형태 등 노출정보</li> <li>다. 인체·동물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위해성 정보</li> <li>라. 효과·효능</li> <li>마. 분류·표시 및 포장</li> <li>바. 사용상 주의사항 및 폐기방법</li> <li>사. 국내외 사용 및 규제정보</li> </ol> </li> <li>3. 살생물제 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 공정</li> <li>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제6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안전용기 또는 포장의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li> <li>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7항에 따른 제조·보관시설의 설치·운영 계획 또는 현황</li> <li>6. 살생물제 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종합 자료</li> <li>7.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살생물제 제품 승인 기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완화하여 적용받으려는 경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li> <li>나. 살생물제 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li> <li>다.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받으려는 경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li> <li>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경우: 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 부동의 확인결과서 사본</li> <li>마. 이전의 제품승인을 신청할 때 이미 제출한 자료와 내용이 동일한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li> </ol> </li> </ol>	<p>수수료</p> <p>신규승인: 200,000원 (중기업은 100,000원 소기업은 40,000원)</p> <p>재승인: 100,000원 (중기업은 50,000원 소기업은 20,000원)</p>
<p>담당 공무원 확인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li> <li>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li> </ol>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화학물질안전원

## 제품승인 평가 시작통지서

신청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살생물제 품명		살생물제 품유형	
접수번호	(접수일시: )	평가완료 예정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품승인을 위한 평가의 시작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직인

## 제품승인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신청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살생물제 품명		살생물제 품유형	
접수번호 (접수일시)			
연장기간			
연장사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9항에 따라 제품승인 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직인

##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

(앞쪽)

승인받은 자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구분	[ ] 제조자 [ ] 수입자 [ ] 제54조의2에 따라 선임된 자

살생물제품명	승인번호	제 호
살생물제품유형	승인 유효기간	
제형	사용대상자 및 사용범위	
표준사용량	용도	
제조시설 소재지	유통기한	
함유된 모든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효과·효능		
사용방법		
사용상 주의사항		
제조방법		
살생물물질 공급자명 및 주소		
살생물처리 제품 종류 및 사용방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22조제6항·[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21조제10항·[ ]제2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직인

변경내용

연월일	내 용

## 제품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변경사항	제품명	
	살생물제 품유형	
	함유된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제형	
	효과·효능	용도
	사용대상자 및 사용범위	
	표준사용량	사용방법
	유통기한	
	사용상 주의사항	
살생물처리제품의 종류 및 사용방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살생물제품 승인에 대한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50,000원 (중기업은 25,000원, 소기업은 10,000원)
------	-------------------	---

###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화학물질안전원

## 제품승인 특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구분	[ ] 제조 [ ] 수입	
신청사항	제품명	살생물제 품유형
	제형	유통기한
	표준사용량	사용방법
	제조시설 소재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물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을 포함한 모든 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사용 목적 및 용도</li> <li>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의 공급자명 및 주소</li> </ol> </li> <li>살생물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 공정</li> <li>살생물제품의 사용상 주의사항 및 폐기방법</li> <li>「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제6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안전용기 또는 포장의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li> <li>「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7항에 따른 제조·보관시설의 설치·운영 계획 또는 현황</li> <li>살생물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li> <li>「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자료</li> </ol>	수수료 50,000원  (중기업은 25,000원, 소기업은 10,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자등록증명(개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li> <li>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li> </ol>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 제품유사성 인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기준 살생물 제품	제품명	살생물제품유형
	승인번호	
신청정보	제품명	살생물제품유형
	제형	유통기한
	표준사용량	용도
	사용방법	
	살생물물질 공급자명 및 주소	
	제조시설 소재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품유사성의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물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을 포함한 모든 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사용 목적 및 용도</li> <li>나.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의 공급자명 및 주소</li> </ol> </li> <li>2. 살생물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 공정</li> <li>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제6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안전용기 또는 포장의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li> <li>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7항에 따른 제조·보관 시설의 설치·운영 계획 또는 현황</li> <li>5. 살생물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li> <li>6.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사용에 관한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li> </ol>	<p>수수료</p> <p>50,000원</p> <p>(중기업은 25,000원, 소기업은 10,000원)</p>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li> <li>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li> </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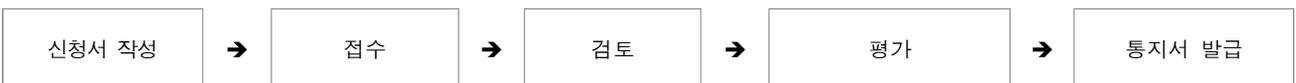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화학물질안전원

## 제품유사성 인정통지서

신청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기준 살생물제품 정보	제품명		
	살생물제품유형		
	승인번호		
	승인 유효기간		
제품명		살생물제품유형	
제조시설 소재지			
접수번호	(접수일시: )	승인번호	제 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에 따라 제품유사성의 인정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직인

## 정보 제공 · 열람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청구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0일 이내
청구인	성명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소재지)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청구 내용	청구대상 정보의 목록 및 범위	
	제공 방법	[ ] 제공 [ ] 열람
	수령 방법	[ ] 직접 방문 [ ] 우편 [ ] 팩스 전송 [ ] 정보통신망 [ ] 기타( )
청구 이유		
용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 정보의 [ ] 제공, [ ] 열람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사업자 ○ ○ ○ 귀하

첨부서류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의 구매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 정보청구결과통지서

수신자 ○○○ (우 , 주소 )

청구인	성명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소(소재지)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청구 내용	청구대상 정보의 목록 및 범위			
제공 내용	제공 정보의 목록 및 범위			
	제공 정보의 수령 방법	[ ] 직접 방문	[ ] 우편	[ ] 팩스 전송 [ ] 정보통신망 [ ] 기타( )
	열람 정보의 목록 및 범위			
열람 일시 및 장소				

미제공 목록 및 사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 제3항에 따라 귀하의 정보 청구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서명 또는 인)

### 유의사항

귀하에게 제공한 정보나 귀하가 열람한 정보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을 위반하여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8조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정보 제공 · 열람 명령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20일 이내
신청인	성명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소재지)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신청 내용	정보의 제공 · 열람 신청대상		
	신청대상 정보의 목록 및 범위		
신청 이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 정보의 [ ] 제공, [ ] 열람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1. 정보 제공 · 열람 청구서 사본 및 해당 살생물처리제품 구매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정보청구결과통지서 사본	20,000원 (중기업은 10,000원, 소기업은 4,000원)

##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 제공·열람 명령 신청결과 통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정보 제공·열람 명령 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신청인	성명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소(소재지)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신청 내용	구분	[ ] 제공 [ ] 열람		
	정보의 목록			
결정 내용	정보의 제공·열람 명령 여부			
	명령 대상 정보의 목록			
사유				

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우 도로명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 [ ] 제공 [ ] 열람 명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명합니다.

명령이행	대표자 성명 (법인·단체명)		사업자(법인·단체) 등록번호	
의무자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정보 수령인	성명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소재지)		사업자(법인·단체) 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이행 대상 정보 내용	제공 대상 정보의 목록 및 범위			
	열람 대상 정보의 목록 및 범위			
	열람방법	[ ] 열람 [ ] 시청 [ ] 기타( )		
	수령방법	[ ] 직접 방문 [ ] 우편 [ ] 팩스 전송 [ ] 정보통신망 [ ] 기타		

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자료 보호기간 연장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
------	------	----------

신청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신청사항	자료 보호기간 연장 신청 내용 및 사유
	자료 보호기간 연장신청 대상 자료 목록

수입자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수입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 작성방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의2에 따라 선임된 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란에는 선임된 자의 정보를 적고, 수입자란에는 수입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지
--------	---	----	---	----	---	----	---	----

신청인

처리기관: 화학물질안전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제조 [ ] 수입 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 부동의 확인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4일 이내
------	------	------	--------

신청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① 신청구분	<input type="checkbox"/> 물질승인등	<input type="checkbox"/> 제품승인등
	<input type="checkbox"/> 물질동등성 인정	<input type="checkbox"/> 제품유사성 인정

자료 소유자 정보	② 상호(명칭)	③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④ 성명(대표자)	⑤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⑥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⑦ 해당 시험항목명

⑧ 사용동의 거부사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조  수입 척추동물 시험자료 사용 부동의에 따른 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첨부서류	척추동물시험자료 소유자의 사용 부동의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1. ①란은 신청하려는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에 대한 승인 등의 사항을 적습니다.
2. ②란부터 ⑥란은 해당 시험자료의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적습니다.
3. ⑦란은 사용동의를 거부하는 해당 시험항목명을 적습니다(복수인 경우 모두 적어야 합니다),
4. ⑧란은 사용동의 거부사유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 ] 제조  
[ ] 수입  
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 부동의 확인결과서

신청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접수번호		
구분	[ ] 물질승인등 [ ] 제품승인등	[ ] 물질동등성 인정 [ ] 제품유사성 인정
해당 시험자료		
확인결과 조치사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에 따라 척추동물 시험자료 사용 부동의에 따른 확인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직인

### 과징금 납부통지서 (수납기관 보관용)

발행번호	
납부자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위반일	
위반행위	
납부금액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수납기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 하오니 기한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 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 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지방(유역)환경청장

직인

수납

### 과징금 영수통지서 (지방(유역)환경청장 보관용)

발행번호	
납부자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위반일	
위반행위	
납부금액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수납기관	

위와 같이 납입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수납

귀하

### 과징금 납부영수증 (납부자 보관용)

발행번호	
납부자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위반일	
위반행위	
납부금액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수납기관	

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수납



##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결과 통지서

신청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팩스번호: )

통지내용	당초 납부기한	
	납부기한 연장결과	년 월 일까지( 일)
	연장 허용/ 불허용 사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에 따라 귀하의 과징금에 대하여 위와 같이 납부기한 연장을 [ ]허용 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불허용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지방(유역)환경청장

직인

##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이내
신청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당 초 부과명세	납부고지서 수령일	
	납부고지서 코드번호	
	부과일시	
	부과금액	
	납부기한	

### 분할납부 신청 명세

분 할 납 부	합 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신 청 금 액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유역)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분할납부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 처 리 절 차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유역)환경청

##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결과 통지서

신청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부과기간	납부고지코드번호	부과금액	분할납부금액	분할납부기한 간격

### 분할납부사항

분할 횟수	납부기한	분할납부금액
1 차	. . .	
2 차	. . .	
3 차	. . .	
4 차	. . .	
5 차	. . .	
6 차	. . .	
합 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에 따라 귀하의 과징금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분할납부를 [ ]허용 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불허용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지방(유역)환경청장

직인

### 안내 말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6항에 따라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부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담보의 변경,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과징금 부과권자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시험·검사기관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및 연락처 (전자우편: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구분	[ ] 신규지정 [ ] 재지정	
시험·검사 분야	[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	[ ] 시험·검사업무의 대행
	세부분야	세부분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 전단, 제41조제6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시험·검사기관 운영계획서 2.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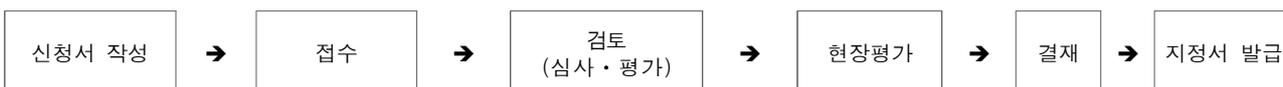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화학물질안전원

## 시험·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구분	[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 [ ] 시험·검사업무의 대행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검사기관의 변경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시험·검사기관 지정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화학물질안전원

제 호

## 시험·검사기관 지정서

1. 기관명 :

2. 대표자 :

3. 소재지 :

4. 시험·검사 분야 :

5. 지정 유효기간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직인

### 변경지정

변경일자

내 용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의2서식] 삭제 <2024. 12. 31.>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의3서식] 삭제 <2024. 12. 31.>

##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갱신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자가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신청 구분	[ ] 피해자 본인이 신청 [ ] 대리인이 신청	
대리인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	성명	생년월일	
	주소		
	피해자와의 관계:		
유효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5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의6에 따라 살생물제품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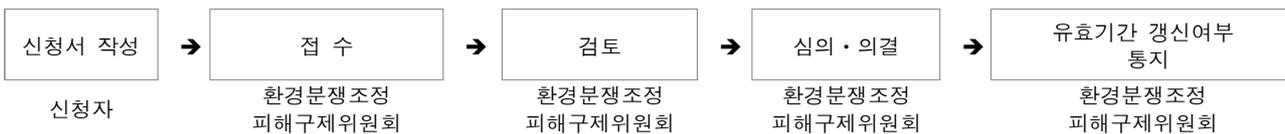
###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기록 등 건강피해가 유효기간 동안에 계속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

#### 신청안내

신청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처리절차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의5서식] 삭제 <2024. 12. 31.>

##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납부고지서

납부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분담금 부과명세	분담금 부과 금액(원)	
	납부기한	
수납기관의 납부계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16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8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의11에 따라 위와 같이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을 부과하오니 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 직인**

### 유의사항

- 위 분담금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분담금 납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 분담금을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의7서식] <신설 2021. 12. 31.>

##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이의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납부번호	납부고지서 발급일	납부고지서 수령일	
신청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분담금 부과명세	분담금 부과금액(원)		
	납부기한		
이의신청사 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16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10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의12에 따라 위와 같이 부과된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의8서식] <신설 2021. 12. 31.>

##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분할납부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신청 내용	분담금액(원)			납부기한					
	분할납부 기간								
	합계								
	회차	분납일	분납금액	회차	분납일	분납금액	회차	분납일	분납금액
	1차			5차			9차		
	2차			6차			10차		
	3차			7차			11차		
4차			8차			12차			
신청 사유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부과된 분담금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11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의1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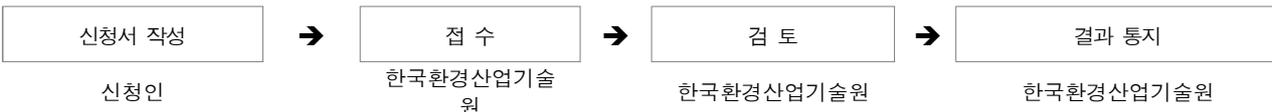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11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분담금 및 가산금(「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16제7항 후단에 따른 가산금이 부과된 경우만 해당합니다)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보장하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서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	---

#### 처리절차



## 살생물제품 피해구제분담금 분할납부 신청결과 통지서

신청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신청내용	분할납부 기간	
	분할납부 횟수	
	분할납부 분담금 합계 (원)	
	신청사유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부과된 분담금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신청 결과	<input type="checkbox"/> 인정	<input type="checkbox"/> 불인정
	※ 불인정 사유	

분할납부 내용	분할납부 기간									
	분할납부 금액 (원)	합계								
		회차	분납일	분납금액	회차	분납일	분납금액	회차	분납일	분납금액
		1차			5차			9차		
		2차			6차			10차		
		3차			7차			11차		
		4차			8차			12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11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의1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살생물제 품피해구제분담금의 분할납부 신청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 직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 [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 ]**  
**살생물물질 승인 · 변경승인 [ ]**  
**살생물제품 승인 · 변경승인 [ ]**      **권리 · 의무 승계통보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승계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고 또는 승인번호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 승인번호			
피승계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고 또는 승인번호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 승인번호			
승계구분	[ ] 상속	[ ] 양도·양수	[ ] 합병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인

(서명 또는 인)

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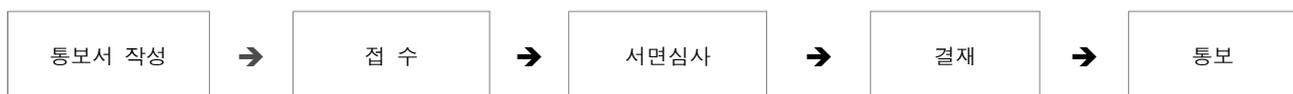
첨부서류	1. 다음 각 목 중 해당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승인 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물질승인 또는 제15조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 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제품승인 또는 제23조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 2.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속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계약서 사본 등 양도 또는 합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도 또는 합병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통보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통보인

처리기관: 화학물질안전원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외제조사에 의한  선임  해임 사실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선임된 자 또는 해임된 자)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소재지(법인)	(전화번호: , 팩스번호: )
국외제조사	상호(명칭)	제조국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국내 수입자	상호(명칭)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구분	<input type="checkbox"/> 살생물물질 <input type="checkbox"/> 살생물제품 <input type="checkbox"/> 살생물처리제품	
살생물제 정보	살생물물질명·제품명	
	고유번호(CAS No. 등) (살생물물질의 경우)	
	살생물제품유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2항에 따라 국외제조사에 의하여 위 살생물제의 국내 수입자를 갈음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

선임 된 사실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해임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선입계약서 또는 해임통보서 사본 등 선입 또는 해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신고인, 국외제조사, 국내수입자 및 살생물제 정보 등 신고사항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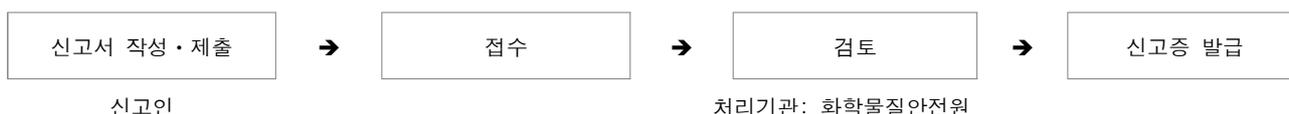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작성방법

1. 국내 수입자란은 수입자가 다수인 경우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국외제조자의 소재지(사업장)"란은 국외제조자가 해당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하는 시설의 소재지에 대한 정보를 작성합니다.
3. "살생물제 정보의 고유번호(CAS No. 등)"란은 살생물물질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처리절차



제 호

##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해임) 사실 신고증

1. 신고자(선임된 자 또는 해임된 자) 정보

가. 상호(명칭):

나.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다. 성명(대표자) :

라. 소재지(사업장) :

2. 국외제조자의 상호(명칭):

3. 살생물제 수입자의 상호(명칭):

4. 신고내용 : [ ] 선임 사실 [ ] 해임 사실

5. 살생물물질의 명칭 또는 제품의 명칭:

6. 살생물제 품유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4항에 따라 국외제조자에 의하여 살생물제 수입자를 갈음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 선임 또는 해임된 사실을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직인